


2023 - 176호	교육목표 : 바르게 슬기롭게 행복하게 가 정 통 신 문	발송일 2023. 11. 28.
담당부서 생활안전진로부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의견수렴	 신북초등학교 ☎532-0172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에 따라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부모님이 함께 동참하는 생활교육을 하고자 본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교원의 학생활동지도에 관한 고시」, 용어 정정, 불명확 조항 정정 및 삭제 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첨부해드리는 바와 같으며,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물에는 개정안 전문이 함께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 자녀와 함께 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만약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12월 4일(월) 10:00까지 E알리미** 혹은 **담당선생님께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아진 의견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하고 최종 반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을 토대로 공동체의 규칙을 준수하고 타인을 배려하며 책무성을 증진하는 생활교육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학생들이 학교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미래의 시민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8일

신 북 초 등 학 교 장

신북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 대한 의견

관련 조항	의견	비고
제 0장 제○조		
제 0장 제○조		

2023년 월 일

학부모(보호자) 성명: (서명)

학 생 성명: (서명)